

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864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는 클라이밍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시립체육시설로, 위탁기간이 2025.12.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
- 나. 자립 운영이 가능한 경영 능력과 클라이밍 프로그램 기획·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,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 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 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(운영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은 클라이밍 체험·교육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시설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자립형 경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성이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
-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
-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
-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·관리
- 시설의 사용, 이용자관리,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
- 사용·수익허가(근린생활시설 및 자판기 임대 등)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

라. 제3자 재위탁 : 해당

- 필요성 : 산악문화체험센터 내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재위탁 필요
- 제3자 재위탁 중(예정)인 사무 : 1건
 - 카페 운영 1건 (현 계약기간 : 2024.9.13. ~ 2025.12.31.)

마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112
- 규모 : 부지 3,000㎡, 연면적 2,197.68㎡(지하1층/지상2층)
- 주요시설 : 실내볼더링장, 외부암벽장, 시청각실, 기획전시실 등

○ 위 치 도



바. 민간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('26.1.1. ~ '28.12.31.)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아. 소요예산

○ 소요예산 : 자립형으로 운영비 지원 없음

자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○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

제16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(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)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..... 11. 산악문화체험센터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각호와 같다.
.....

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김예정 (☎2133-2748)